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932

발의연월일: 2021. 10. 22.

발 의 자 : 홍정민·강준현·강훈식

김경만 · 김민석 · 김병욱

김병주 • 김상희 • 김영진

김주영 · 김진표 · 김홍걸

노웅래 • 변재일 • 서영석

소병철 · 송영길 · 송옥주

안민석 · 양향자 · 오기형

오영환 • 윤영찬 • 윤후덕

이광재 • 아주진비 • 이용우

이워욱 • 이장섭 • 이학영

임오경 · 임호선 · 전용기

조승래 · 최인호 · 홍기원

홍익표 의원(3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중무역분쟁과 반도체부족 사태를 계기로, 반도체기술을 비롯한 국가핵심전략기술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국가경제와 국가안보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국가가 전략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국가핵 심전략기술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근거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 지 않아,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임.

이에 국가핵심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일반 시설투자와 공통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금액 산출 방법을 정하여 관련 산업계가 보다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국가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영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제129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중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하거나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하이 조에서 "국가핵심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같은목에 1) 및 2)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신성장사업화시설: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5,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 2) 국가핵심전략기술사업화시설: 100분의 6(중견기업은 100분의 8, 중소기업은 100분의 16)에 상당하는 금액

제24조제1항제2호나목 본문 중 "100분의 3"을 "100분의 3(국가핵심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신성장사업화시설"을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핵심전략기술사업화시설"로 한다.

3. 제2호를 적용하는 때에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핵심전략기술사

업화시설(이하 이 호에서 "해당시설"이라 한다)과 해당시설이 아닌 시설(이하 이 호에서 "일반시설"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투자가 이루 어지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투자 금액을 각각 계산 하여 적용한다.

가. 해당시설 투자금액: 총시설 투자금액 × 해당시설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생산량 ÷ 총생산량

나. 일반시설 투자금액: 총시설 투자금액 - 해당시설 투자금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	
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	
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	
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	
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	
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제금액	2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	가
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	
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신성장・원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	

업화시설"이라 한다)에 <u>투자</u>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중 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 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 는 금액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 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

			<u>투</u>	<u>- 가</u>
하거나	「국기	·핵심진	선략신	<u>- 업</u>
경쟁력 경) 화 및	보호	에 관	<u> 한</u>
특별조치	법」 7	세11조	બી ઘ	나라
지정된	국가핵	심전력	ᆤ기술	글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하	0]
조에서 "	국가핵	심전력	ᆤ기술	:사
업화시설'	"이라	한다)	에 20	024
년 12월				
<u>경우에는</u>				
른 금액-				

- 1) 신성장사업화시설: 100분
 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2)
 에 상당하는 금액
- 2) 국가핵심전략기술사업화
 시설: 100분의 6(중견기업
 은 100분의 8, 중소기업은
 100분의 16)에 상당하는 금
 액

나.	 	
	100 별 히	0(그리 최

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 다.

<신 설>

- ② ~ ④ (생 략)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 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u>심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u>	경
<u>우에는 100분의 4)</u>	

- 3. 제2호를 적용하는 때에 신성 장사업화시설 및 국가핵심전 략기술사업화시설(이하 이 호 에서 "해당시설"이라 한다)과 해당시설이 아닌 시설(이하 이 호에서 "일반시설"이라 한 다)에 공통으로 투자가 이루 어지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의 구분에 따라 투자 금액을 각각 계산하여 적용한다.
 - 가. 해당시설 투자금액: 총시
 설 투자금액 × 해당시설에
 서 생산하는 제품의 생산량
 ÷ 총생산량
 - 나. 일반시설 투자금액: 총시

 설 투자금액 해당시설

 투자금액
- ② ~ ④ (현행과 같음)
- ⑤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의 계 산방법, <u>신성장사업화시설</u>의 판 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성장사</u>	업화시설	설 달	및 국
<u> 가핵심</u>	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